2026년도
산업진단 지원사업 업무지침서
- 신청자 및 진단기관용 -

2026. 6.

한국에너지공단

목 차

Ⅰ. 산업진단 지원사업 개요 ····· 1

1. 사업 개요 ····· 2

2. 추진 절차 ····· 12

3. 유의사항 ····· 14

Ⅱ. 에너지진단보고서 작성 안내 ····· 16

Ⅲ. 별지 서식 ····· 18

Ⅰ. 산업진단 지원사업 개요

산업진단 지원사업 업무지침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절약 추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부문 의무진단 비대상인 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300 toe이상 2,000 toe미만)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혁신 유도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직전 5개년도('21~'25년)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 *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2천toe가 되는 사용량 : 전력(8,734MWh), 휘발유(2,570천L), 경유(2,220천L), LPG(부탄, 1,690천Kg), (B-C유) 2,010천L, 도시가스(LNG) 1,920천Nm^3
> 한국에너지공단 EG-TIPS 홈페이지(https://tips.energy.or.kr/popup/toe.do) 계산기 참고

- 인접해 있는 공장(동일 법인)이라 할지라도 1공장, 2공장 등 공정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장인 경우 각 사업장 별로 대상 인정
- 산업기타로 분류되어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 폐기물, 광업 등의 이유로 공장등록증은 없지만 공단이 산업 분야로 판단하는 경우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인정

○ 제외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2항에 따라 5개년도('22~'26년) 내 의무진단을 받은 사업장 또는 받을 예정인 사업장
- 최근 5년간('21~'25년) 동일 사업 내용으로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에너지진단 지원사업 수혜자 또는 참여 예정인 사업장
- 기타

·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휴·폐업, 부도, 화의, 기업회생절차 중인 경우
· 완전 자본잠식 상태 및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지원개소 미달시 추가 공고·접수 예정)

ㅇ 신청방법

- 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지원조건을 확인 후, ‘에너지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진단 신청서

- 에너지진단의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하여야 함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1,350백만원(사업장 총 270개 내외)

ㅇ 지원한도

연간에너지 사용량	지원금액*	총지원규모**	지원 개소**
300toe 이상 ~ 2,000toe 미만	5 백만원 (정액)	1,350 백만원	270개소

* 진단완료 시 사업장 1개소당 5백만원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는 참여사업주가 부담

** 총지원규모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사업 수요에 따라 총예산범위 내에서 산업진단과 개선이행을 교차 지원 가능)

- 지원금은 대상 사업장을 진단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에 지급

* 진단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진단 수행 중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지원 불가

나. 에너지진단 추진내용

□ 참여 진단기관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0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따라 에너지 관련 기술 장비 및 인력을 구비하여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의 ‘26년도 사업 참여 진단기관 공모 시 신청 접수한 진단기관 대상으로 사업 참여 진단기관 선정

⇒ **[별지 제2호 서식] 산업진단지원 사업 진단기관 참여 신청서** 제출要

- 진단기관 지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본 사업 참여 불가
- '24~'25년 진단기관 평가 결과 S~C등급을 부여받고 산업부문 의무진단 수행 실적을 보유한 진단기관만 참여 가능
  * 진단기관 등록현황 및 평가등급은 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진단기관 평가 제외 진단기관의 경우(신규 지정 진단기관) 공고일 이전까지 산업부문 의무진단 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그린버튼 마켓 플레이스(https://www.min24.energy.or.kr/gbmarket/) 진단기관으로 등록 및 기업소개가 완료되어야 함
- 진단기관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에너지진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장조건(화재, 도난, 폭발, 파손 등)을 포함한 보험
- 사업 참여 진단기관에 최근 진단기관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진단기관별 수행물량 배정

□ 지원대상 선정

ㅇ 신청기간 내 지원개소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지원대상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구.KEEP+) 참여사업장

* 본 공고 기간 또는 별도 신청 가능

②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참여하는 사업장

③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큰 사업장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한국형 그린버튼 가입 필수 [그린버튼 마켓 플레이스(https://min24.energy.or.kr/gbmarket/)에 참여사업장으로 가입이 완료되어야 함]

ㅇ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사용량, 기업규모, 업종, 특화설비 등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 진단기관 배정

ㅇ 사업주는 진단 신청 시 선호 진단기관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

ㅇ 사업주가 선호한 진단기관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배정결과를 사업주와 진단기관에 통보

- 선호 진단기관 수요가 진단기관별 배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주가 선호 진단기관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진단기관을 배정

□ 에너지진단 수행

ㅇ 진단기관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에너지진단을 수행

- 진단기관은 현장진단 종료 후 14일 이내에 에너지진단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
-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 에너지진단을 수행하되, 진단착수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함
- 소요인력은 해당 진단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어야 함
- 진단인력 2인 중 반장은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진단보고서는 현장진단을 수행한 기술인력이 직접 작성하여야 함

<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기준>

연간 에너지사용량	소요일수			소요인력 (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보고서 작성	합계		
300~2,000toe	2	1	3	2	6

ㅇ 에너지진단 수행점검 결과 미등록 기술인력 투입 또는 현장 진단일수 등을 미준수한 경우, 공단은 진단기관에게 지원금 미지급 및 차년도 산업진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에너지진단 단계별 세부 진단내용

단계	세부 진단내용
현장진단	• 에너지 이용시설 및 설비 관련 현황파악 • 에너지 사용형태, 제품생산 및 설비의 운용현황 파악 •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 현장진단 일정, 각종 자료 및 진단 지원사항, 진단보고서 제출 일자 등에 대한 상호협의 및 정보교환 • 설비별 에너지 사용현황 상세 파악 • 에너지진단 세부 계획 수립 • 측정장비에 의한 현장 실측 중심 진단 실시 • 에너지 운영시스템 점검 • 설비별 운전 성능 및 운전 상태 파악 • 에너지 손실요인 및 개선방안 도출 •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투자 경제성 분석 • 진단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
보고서 작성	• 현장진단 시 도출된 개선방안 상세 분석 • 적용 가능 신기술 및 참고자료 수집 • 기술적용사례 등 시장조사 • 진단보고서 작성 및 개선내용 평가 또는 감수 • 협의된 기간내 진단보고서 제출

○ 에너지진단의 범위

열설비	에너지진단의 범위
열발생설비	• 연료공급 및 연소계통과 급수 관리 • 보일러, 각종 요로 등 열변환장치의 성능시험 • 공정폐열, 부생가스, 부생유 및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열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설비의 관리 • 손실요인과 효율 향상방안 분석 • 개선사항에 대한 시설투자 및 경제성 분석
열수송설비	• 에너지 이송계통의 손실요인 • 합리적인 에너지 이송시스템 확립 • 폐열회수 및 보온상태
열사용설비	• 각종 열사용설비의 성능시험 • 新공정 및 조업개선 적용방안 • 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전기설비	에너지진단의 범위
수배전설비	• 전력수급의 적정여부 • 적정용량, 효율적 운전 • 역률 관리 및 최대수요전력 관리 검토
동력설비	• 동력설비 적정용량 및 운전효율 • 부하율 및 역률 개선안 • 新공정, 조업개선 적용방안 • 제어방식 개선방안
전열 및 조명설비	• 열원 대체 적용방안 • 적정부하 및 효율적 운전관리 • 적정 조도관리 및 절전형 광원 도입
기타	• 폐열발전 설비의 운전관리 • 에너지이용시설의 효율측정 • 사업장의 에너지부하 경향 분석 • 신재생에너지 도입 • 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 진단보고서 작성

- 진단보고서는 사업장 개요, 공정흐름도, 에너지사용현황, 온실가스배출현황, 설비현황, 진단결과종합, 세부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신 정보·기술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진단보고서는 사업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며, 개선사항에 활용된 각종 설비의 열정산서 자료첨부
- 예상절감효과에는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작성하고, 각 산출근거를 식으로 제시
- 사업주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설비개선 투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단 및 여·타 기관의 보조, 융자지원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 진단 시 분쟁 및 손해배상 처리

- 본 진단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사업주”와 “진단기관”이 서로 합의하여 해결해야 함
- 진단기관은 본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기간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에너지진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장조건(화재, 도난, 폭발, 파손 등)을 포함한 보험

- 진단기관은 본 진단 수행 중 제반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고 예시 : 공정설비의 손상 및 손실, 인명 피해 등

□ 진단비용 산정

○ 진단비용

연간 에너지사용량	지원금액(사업장당)	총 지원규모
300toe 이상 ~ 2,000toe 미만	5 백만원(정액)	1,350 백만원

*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참여 사업자가 부담

○ 진단비용 산정 기준

구 분	산출근거
진단소요인력	1개 진단사업장 당 진단인력 2인(반장/반원) - 반장은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구성
직접인건비	○ 1개 진단사업장 당 2인으로 계산 -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1명 기준으로 계산 ○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적용(기계/설비부문) - 기술사(474,467원/일), 특급기술자(401,407원/일), 고급기술자(335,379원/일), 중급기술자(300,463원/일) 초급기술자(263,602원/일)
직접경비	○ 온도계, 연소가스 분석기 등 진단장비에 대한 사용비로 현장진단 소요일수(2일) 기준으로 200,000원/일을 곱하여 산출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로 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을 감안하여,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를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산출

○ 진단비용 산출근거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2025.12.0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사업비용징수규정" (2022.12.29. 한국에너지공단 내규)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024.12.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참고 : 진단비용 산정 기준 >

산업진단 지원사업 지출내역서

귀하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진단기관	진단기관명			
	대표자		서명(인)	
기업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서명(인)	

지출금액 (VAT 제외)	₩5,200,000	원정

1. 직접인건비

	구분	노임단가	일수	계
기술인력1	고급기술자	₩335,379	3	₩1,006,137
기술인력2	중급기술자	₩300,463	3	₩901,389

₩1,907,526

2. 직접경비

ㅇ장비 사용비

	대수	금액	계	비고
장비 사용료	15종	₩400,000	₩400,000	

₩400,000

3. 제경비

ㅇ 직접인건비의 110%

₩2,098,279

4. 기술료

ㅇ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801,161

합계	₩5,200,000

※ 부가가치세

ㅇ 소계의 10%

₩520,000

○ 기술인력 등급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별표4]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산정

등 급	자격조건	기술인력 지정기준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건축·에너지 분야의 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목
특급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가스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목
고급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가스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목, ‘라’목
중급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가스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목, ‘바’목 및 ‘사’목
초급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화공 및 세라믹·전기·건축·에너지·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아’목

* 공단의 진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하위등급의 기술자가 상위등급으로 자격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
(한국온실가스감축에너지진단협회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기술등급확인서’도 인정)

□ 진단보고서 보완 및 평가 방법

○ 공단은 진단기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진단기관에 통보

- 해당분야의 전문가 2인을 통해 진단보고서 평가 실시
  ※ 70점 미만시 진단기관은 보고서를 보완하여 재평가 요청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보완 제출시 통보일 기준 14일 이내 제출

< 평가 방법 >

평가항목	세부항목	내 용
보고서의 완성도 (60%)	작성기준 준수	○ 진단보고서 작성기준 준수 여부(체크리스트 포함)
	개선안 발굴 노력	○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준수 여부 및 관련 개선안 도출 노력도 ○ 현장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개선 아이템 발굴 여부
	자료의 충실도	○ 첨부자료(안내자료, 열정산서, 기술자료 등)의 사업장 관련도 및 활용성
개선방안의 타당성 (20%)	품질향상 노력	○ 개선방안의 효과적 기술 및 이해 용이성 ○ 신기술 적용 타당성 검토 등 보고서 품질향상 노력
	적용가능성	○ 사업장 환경(설비,공정,공간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적용 가능성
개선효과 산출의 적정성 (20%)	산출의 적정성	○ 계산조건(가동시간, 부하율, 효율 등), 절감잠재량, 투자비 산출의 적정성
	적용수식의 적정성	○ 계산 시 적용 수식 및 계산의 정확성

□ 진단비용 (지원금) 지급

○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을 신청하고 공단은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

< 보고서 평가결과 점수에 따른 지원비용 지급기준 >

평가결과 점수	지급기준
70점 이상(적합)	지원금 100% 지급
70점 미만	지원금 50% 지급

○ 진단기관은 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7호 서식] “에너지진단 비용 지원 지급 신청서” 를 작성하여 공단에 지원금 지급 요청

2 추진 절차

□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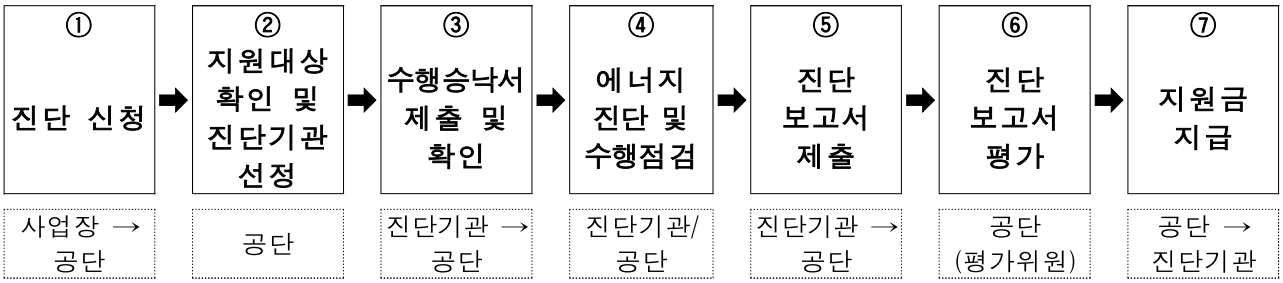

① 진단신청(사업장 → 공단)

○ 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의 지원조건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에너지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신청] 공단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효율향상 → 7. 에너지진단제도 →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 (https://min24.energy.or.kr/nedms) → 산업진단 지원사업 신청

②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공단)

○ 공단에서는 진단신청서 및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진단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함

- 공단은 에너지사용량, 업종,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

○ 공단은 사업주가 선호하는 진단기관을 최우선하여 진단 가능한 일정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통보

③ 수행승낙서 제출 및 확인(진단기관 → 공단)

○ 진단기관과 진단지원 대상 사업장은 서로 합의하에 수행승낙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진단대상 사업장의 에너지진단 일정을 현장진단 개시 3일 전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 수행 승낙서 통보일 이후 조속한 시일 내 현장진단에 착수하여야 함

⇒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진단 수행승낙서**

④-1 에너지진단 및 수행점검(진단기관 / 공단)

ㅇ 진단기관은 사업장의 에너지사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에너지진단을 성실히 수행

ㅇ 진단기관에 등록된 기술 인력의 투입여부 및 현장진단 일정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

- 공단은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진단기관별 전체 수행물량의 50% 이내 현장조사 실시(그 외 수행물량은 유선조사로 진행)

⇒ **[별지 제4호 서식] 에너지진단 수행점검 보고서**

④-2 진단결과 제공 및 설명(진단기관 → 사업장)

ㅇ 진단기관은 사업장 대표자에게 에너지진단의 결과물인 에너지진단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

- 에너지진단결과 도출된 개선안과 그에 따른 개선투자 방안에 대해 사업주에게 설명
-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프로그램 소개 및 신청 방법 안내

⑤ 진단보고서 제출(진단기관 → 공단)

ㅇ 진단기관은 현장 진단종료 후 14일 이내에 에너지진단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

⇒ **[별지 제5호 서식] 에너지진단 결과보고**

※ 지원금의 예산 집행을 위해 '26년 12월 11일까지 배정받은 사업장에 대한 진단 완료 및 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⑥ 진단보고서 평가(공단)

ㅇ 공단은 진단기관이 제출한 진단보고서를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진단기관에 통보

- 진단보고서 보완요청 시 14일 이내 내용 수정하여 제출 후 재평가

⇒ **[별지 제7호 서식] 에너지진단 보고서 평가 결과 통보서**

⑦ 지원금 지급(공단 → 진단기관)

ㅇ 진단기관은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을 신청하고 공단은 지급 신청서 내용을 확인 후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

⇒ **[별지 제8호 서식] 에너지진단 지원비용 지급 신청서**

3 유의사항

□ 진단기관 유의사항

○ 진단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을 수행하거나 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진단비용을 지원하지 않거나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진단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본 진단 수행 중 제반사고(사업장 설비의 손상 및 손실, 인명 피해 등)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진단 지원대상 사업주 및 해당 진단기관은 사업 종료 후 2년간 공단이 에너지사용량 등의 모니터링을 수행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진단기관은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이 완료된 후, 다음 연도부터 2년 동안 진단내용의 이행실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장이 「산업진단 개선이행 지원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개선이행 지원사업 사후관리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함

⇒ **[별지 제10호 서식] 에너지진단 이행실태 보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 이행 지원사업 사후관리 점검 확인서**

○ 진단기관은 '산업진단' 관리시스템에 사업장 설비현황 및 예상절감 효과를 반드시 입력하고 에너지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청자(사업주) 유의사항

○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형자산의 소유권은 진단 지원 대상 사업장의 대표에게 양도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공단과 사업주의 공동소유이며, 공단은 공공의 목적으로 무형적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음

○ 「산업진단 지원사업 진단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내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 정부부처 및 지자체(집행기관 포함)에게 사업장 식별정보 및 에너지진단 결과 등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10%)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참여 확인을 증빙하는 서류는 진단관리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별지 제9호 서식] 에너지진단 지원 비용 지급 통지서**

□ 지침 관련 사항

ㅇ 이 지침은 2026년도 산업진단 지원사업에 적용함

ㅇ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지침 내용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변경할 수 있음

ㅇ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23호)」을 참고하여 공단이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음

ㅇ 기타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처 ☏ 052-920-0653

Ⅱ. 에너지진단보고서 작성 안내

산업진단 지원사업 업무지침서

1 에너지진단보고서 작성

□ 일반현황

○ 업체 개요, 에너지사용현황, 온실가스배출량 현황, 설비 현황, 열화상 진단, 용어설명 등을 작성

□ 진단결과

○ 진단 범위 및 적용 기준(에너지 단가, 측정 및 데이터 판단의 기준 등),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종합의견, 기대효과 종합 등을 작성

□ 세부 개선사항

○ 운전현황은 현 운전상태, 열수지 분석 등을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

○ 개선방안은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

- 공정설비 교체 제안 시 에너지 흐름의 변화 등 에너지사용 절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기대효과에는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회수기간 등 개선 경제성을 작성하고, 각 산출 근거를 식으로 제시

- 투자비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작성

□ 첨부사항

○ 설비투자 개선을 위한 보조, 융자지원 사업 등 안내자료 첨부

○ [세부개선사항]에 활용된 각종 설비의 열정산서 자료를 명시

○ 신기술, 적용사례 등 진단 내용과 관련된 기술자료 수록

Ⅲ.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진단 신청서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주요 생산품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KSIC)	
담당자	성명	직위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에너지 사용량 (년)	에너지원	( )	( )	( )	연료 계 (toe)	전력 (MWh)	전력 계 (toe)	합 계 (toe)
	사용량							

선호 에너지진단 수행기관(에너지진단전문기관) 및 일정

1순위 *(필수 기재)*	2순위 *(선택 기재)*	3순위 *(선택 기재)*

에너지진단 가능 일정 : 2026년 월 일 ~ 월 일

당사는 “산업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추후 당사의 현장진단 및 개선이행 실태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_____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직전 5개년도(2021~2025년) 중 1개년도 월별 에너지사용량 입증 서류(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
4. 산업진단 지원사업 진단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산업진단 지원사업 진단기관 참여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진단기관</td><td colspan="2">진단기관명</td><td colspan="2">대표자</td></tr>
<tr><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지정번호</td></tr>
<tr><td rowspan="2">실 무
책임자</td><td>성명</td><td>직위</td><td>부서</td></tr>
<tr><td>전화번호</td><td>이메일</td><td>FAX</td></tr>
<tr><td colspan="2">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td><td colspan="3">20 . . . ~ 20 . . .</td></tr>
</table>

본 진단기관은 「2026년도 산업진단 지원사업 계획」 및 「2026년도 산업진단 지원사업 업무지침서」에 따라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진단기관)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빙 서류 1부.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진단 수행승낙서

진단대상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무실/휴대폰)	
진단기관	진단기관명			
	진단인력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진단일정	현장진단	2026. . . ~ 2026. . . (일간)		
	보고서 작성	2026. . . ~ 2026. . . (일간)		

본 사업장 및 진단기관은 「2026년도 산업진단 지원사업 계획」 및 「2026년도 산업진단지원사업 업무지침서」에 따라 위 조건으로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것을 승낙하며, 진단비용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신청자(사업장 대표) : (인) 진단기관 : (인)

[별지 제4호 서식]

에너지진단 수행점검 보고서

☐ 현장방문 ☐ 유선

진단대상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서명)	전화번호 (사무실/휴대폰)	
진단기관	진단기관명			
	현장진단인력	(서명)		(서명)
진단기간				

확인항목	결과
에너지진단 수행현황 (현장진단 일정 및 진단인력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확인항목 점검결과 미준수 사항

점검자 의견

점검자 확인	소속	직급	성명	(인)
	2026년	월	일	

※ 이행점검 결과 확인항목 미 준수 시 지원금 미지급 및 차년도 에너지진단지원 사업 등의 정부지원(보조)사업 참여제한

[별지 제5호 서식]

에너지진단 결과보고

<table>
<tr><td rowspan="4">진단기관</td><td colspan="2">진단기관명</td><td colspan="2">대표자</td></tr>
<tr><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지정번호</td></tr>
<tr><td rowspan="2">실 무
책임자</td><td>성명</td><td>직위</td><td>부서</td></tr>
<tr><td>전화번호</td><td>이메일</td><td>FAX</td></tr>
<tr><td rowspan="2">진단대상
사업장</td><td colspan="2" rowspan="2">사업장명</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r>
<tr><td colspan="2">법인등록번호</td></tr>
</table>

「2026년도 산업진단 지원사업 계획」 및 「2026년도 산업진단 지원사업 업무지침서」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진단기관의 장 (인)

붙임 : 산업진단 지원사업 에너지진단 결과보고서 1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에너지진단 보고서 평가 결과 보고서

1. 현 황

사업장명			
진단기관명			
평가자		평가일자	2026. .

2. 평가 항목

항목 및 배점	보고서의 완성도	개선방안의 타당성	개선효과산출의 적정성	계 (100)
	60	20	20	
평가점수				

3. 평가점수 : 점

4. 평가소견

[별지 제7호 서식]

에너지진단 보고서 평가 결과 통보서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진단기관명		지정번호	

평가결과	평가점수	00점 이상
	지급기준	정부지원금 지원한도의 00%

「2026년도 산업진단 지원사업 계획」 및 「2026년도 산업진단 지원사업 업무지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의 에너지진단 보고서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별지 제8호 서식]

에너지진단 지원비용 지급 신청서

신청인 (진단기관)	진단기관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정번호
	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실 무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진단대상자 (사업주)	성명(사업장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원비용(정부지원금)									원
	진단대상자 부담금(부가가치세)									원
	합 계									원
	진단수행 승낙일 20 년 월 일					진단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진단대상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산업진단 지원사업 계획」 및 「2026년도 산업진단 지원사업 업무지침서」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의 에너지진단 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진단기관)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지급받을 통장 사본 1부.

[별지 제9호 서식]

에너지진단 지원비용 지급 통지서

신청인 (진단기관)	진단기관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정번호
	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실 무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진단대상자 (사업주)	성명(사업장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원비용(정부지원금)													원
	진단대상자 부담금(부가가치세)													원
	합 계													원
	진단수행 승낙일 20 년 월 일						진단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진단대상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산업진단 지원사업 계획」 및 「2026년도 산업진단 지원사업 업무지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진단 비용에 대한 지원금액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별지 제10호 서식]

(　　)년도 에너지진단 실시업체에 대한

에너지진단 이행실태 보고서

2026. .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진 단 일 자			진단 시 에너지사용량	- 열 : toe/년 - 전기: toe/년
담 당 자	부 서		직 위	
	전 화		성 명	(서명)
	FAX		E-mail	
진단기관명				

Ⅰ. 개선안 내용 및 추진실적

No	진단결과 개선제안 항목 (개선내용 / 설비명)		절감량(toe/년)		절 감 액 (백만원/년)	투자비(백만원)		개 선[주2] 내 역 (CODE)
			연료	전력		금 액	코드[주1]	
1		개선안						
		실 적						
2		개선안						
		실 적						
3		개선안						
		실 적						
4		개선안						
		실 적						
5		개선안						
		실 적						
6		개선안						
		실 적						
7		개선안						
		실 적						
8		개선안						
		실 적						
9		개선안						
		실 적						
10		개선안						
		실 적						
총 계		개선안						
		실 적						

※ 1. 투자비 관련 코드 - 재원조달방법 표기
가 - 자체자금, 나 - 융자(에너지시설자금) 다 - ESCO사업, 라 - VA 마 - 기타
2. 개선내역 CODE - 뒷면 참조

【개선안 내용 및 추진실적 작성방법】

1. 개선안 내용 및 추진실적은 진단보고서 내용 참조
   (Ⅱ. 진단결과종합 2. 기대효과종합 참조)

2. 개선실적은 조사시점까지의 개선실적이며, 추진완료 경과 1년 미만인 항목에 대한 절감량과 절감금액은 1년 실적으로 환산하여 기록

3. 실적중 절감금액은 현재 에너지 원 구입 기준단가 적용

4. 개선 내역란에는 Code 기입

개선 완료 (진행)	- **A** : 개선완료 - **B** : 진행중
개선 예정	- **C** : 개선일정 확정 · C1 : 1년이내 · C2 : 차기 overhaul 기간 또는 3년 이내
연기 or 추진 의사 없음	- **D** : 투자비 관련 연기 경우중 · D1 : 투자비 회수기간 장기화 · D2 : 자금조달 어려움 - **E** : 설비관련 연기 경우중 · E1 : 공정변경 불가 · E2 : 공간제약 · E3 : 공정의 안정성 확보 미비 · E4 : 해당설비 교체예정 - **F** : 개선효과가 예상되지만 타업체 기추진 사례 없음 - **G** : 추진의사 없음의 경우중 · G1 : 현실성 없음(공정에 반영할 수 없는 이론적인 아이디어) · G2 : 기술적 측면의 진단결과 신뢰성 부족 · G3 : 절감효과가 미비 · G4 : 개선의지 없음

5. 개선내역 Code가 B, C인 경우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는 최초 계산 효과로 (진단보고서 참조) 기입

6. 개선내역 Code가 D, E, F, G인 경우 항목별 추가 조사
   (Ⅱ.의 미추진 사유 양식에 기재)

Ⅱ. 미추진 사유

각각의 개선안 중 **개선내역 Code**가 다음인 경우 세부 내용 기록
- **D** (투자비관련 연기) : D1 ~ D2
- **E** (설비관련 연기) : E1 ~ E4
- **F** (기추진 사례 없음)
- **G** (추진의사 없음) : G1 ~ G4

No	개 선 항 목 (설비/내용)	Code	미 추 진 사 유(자세히)

Ⅲ. 진단결과 이행율

○ 개선건수 기준

진단결과 개선 제안 항목수(개수)	개선완료(진행)항목 수(개수)	이행율(%)	평가점수	반영비율 (%)
				30

○ 절감량 기준

진단결과 절감잠재량(toe/년)	개선완료 항목 절감량 (toe/년)	이행율(%)	평가점수	반영비율 (%)
				70

※ 1. 이행율은 개선코드 A(개선완료), B(진행중)만 적용한다.
2. 이행율 평가점수는 개선건수 및 절감량 기준에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산출기준은 <표1> 참조

<표1> 이행율 평가점수 산출기준

이행율 (%)	70이상	60이상	55이상	50이상	45이상	40이상	35이상	30이상	25이상	20이상	15이상	15미만
평가점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5	0

Ⅳ. 종합

일 자	20 . . .	진단기관	직위 성명 (인)
결과소견			

[별지 제11호 서식]

이행 지원사업 사후관리 점검 확인서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진단 수행기관				진단완료일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설비명	기존설비 연간 에너지사용량	개선설비 연간 에너지사용량	연간 에너지 절감량	가동시간

개선설비 사진	*(명판 및 전경 사진)*		
사후관리 점검 일자	20 . . .	진단기관	
		성명	(인)
결과소견			